

2020년도 단체협약 요구안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 지회

전문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경북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며,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본 협약은 대학, 조합의 경북대학교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및 그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노동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대학의 전체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에게 적용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 ①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의 효력은 대학이 정한 제 규정 및 규칙에 우선한다. 협약 내용 중 노동관계법에 미달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 ② 대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임교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기존의 협약이 정한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
- ③ 본 협약의 체결에 따른 조치는 전임교원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제3조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 금지)

대학은 본 협약에서 누락되었거나 관련 법규상의 기준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① 대학은 조합원과 관련된 제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조합이 조합원과 관련된 제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5조 (조합 활동 보장)

- ① 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 ② 대학은 조합이 그 규약에 따라 개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노조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대학은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전임교원이 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전임교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3. 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조합원이 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5. 조합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홍보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조합비 등 공제 인도)

대학은 조합이 조합비 및 조합 결의로 공제 의뢰한 금원에 대해 대상자 명단 및 공제액을 제출하면 해당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임금지급일 다음 날까지 조합에 인도한다.

제9조 (홍보 활동 보장)

- ① 대학은 조합의 자유로운 대학 내 홍보 활동을 보장한다.

- ② 대학은 신입교원 연수에서 조합의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한다.
- ③ 대학은 조합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지회 홈페이지의 개선을 지원한다.

제10조 (책임 강의시수 감면)

대학은 조합의 지회 규약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의 책임 강의시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회장 3시간
2. 부지회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 6시간

제11조 (봉사 점수 인정)

대학은 「경북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의 별표[6]를 개정하여 조합의 지회 규약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에 대해 교내 봉사 점수 12점을 인정한다.

제12조 (조합 사무실 및 경비 지원)

- ① 대학은 원활한 조합 활동을 위해 조합 사무실 공간 및 비품, 기자재, 소모품 등을 제공하며, 사무실의 설비나 집기가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 ② 대학은 조합에 조합 사무실 운영비와 조합원 교육 및 관리 활동 등을 위한 경비로 매월 2,000,000원을 지원한다.

제13조 (시설 및 편의 제공)

- ① 대학은 조합이 대학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대학은 조합이 자체 행사 또는 교육 등에 필요한 교통 편의를 요청하면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한다.
- ③ 대학은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요청한 외부인이 방문한 경우 주차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 사무원에 대해 정기주차권을 제공한다.

제14조 (근로장학생 배정)

대학은 조합의 활동을 보조할 근로장학생 2명을 배정하며, 근로장학생에게는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5조 (문서 열람 및 자료 제공)

대학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조합 활동 및 조합원의 임금, 노동 조건 등에 관한 사항, 대학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문서의 열람 및 자료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정책협의회)

- ① 대학과 조합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 근로조건과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 ② 정책협의회는 대학과 조합의 대표로 구성하며 매 학기마다 1회 개최한다.
- ③ 대학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을 대학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 (대학과 조합의 상호 협력)

- ① 조합과 대학은 대학의 발전과 전임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② 조합과 대학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3장 대학 공공성 및 자율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제18조 (대학 개혁의 원칙)

조합과 대학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학 발전과 개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재원 확보 노력)

- ① 조합과 대학은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지역 균형 발전, 기초 학문 보호,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조합과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정부 재원 비율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③ 조합과 대학은 대학 발전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0조 (대학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민주적 운영)

- ① 조합과 대학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위해 상호 협의한다.
- ② 대학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가 주관하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개정을 위해 조합과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③ 조합과 대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④ 대학은 대학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한다.

제4장 교권 및 인사

제21조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

대학과 조합은 전임교원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협력하여 대처하며,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2조 (인사위원회 참여 보장)

대학은 전임교원 인사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위해 조합에서 추천하는 2명을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5장 근로조건 개선

제23조 (교수 책임시수 단축 등)

① 조합과 대학은 교원의 책임시수를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단축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대학은 신입교원의 안착을 위해 임용 후 2년간 책임시수 및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한다.

제24조 (교육 여건 개선)

① 조합과 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대학은 교원의 강의평가 제도를 강의 개선 등과 같은 본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대학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의 최대 수강 인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명으로 한다.

④ 대학은 현행 폐강 기준을 완화한다.

⑤ 대학은 비대면 강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 설비 등을 확충하고, 비대면 강의를 위한 각종 장비와 도구를 전임교원 개인별로 제공한다.

⑥ 대학은 학과의 기본운영비와 실험실습비를 현행보다 10% 이상 증액하고, 학과 기본 기본운영비는 최저 2,000만원 이상을 배정한다.

제25조 (연구 여건 개선)

① 대학은 전임교원의 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실습 장비를 확충하고, 전자 자료(학술 DB)의 제공을 확대한다.

② 대학은 전임교원의 연구년제 연구 교수 정원을 거점 국립대학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③ 현행 연구년 교수 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년 교수로 선정된 자에게 연구비를 1년

18,000,000원, 6개월 10,000,000원 이상 지원한다.

- ④ 대학은 신입교원 정착연구비를 인문·사회·예체능계는 20,000,000원, 이공·자연·의학계는 25,000,000원 이상을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⑤ 대학은 전임교원의 교내 연구비 지급 대상자의 수와 지급 금액을 확충한다.
- ⑥ 대학은 학술 활동 경비 및 지원금의 재원을 확충한다.

제26조 (교연비 등 업무 경감)

- ① 대학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를 개선하여 전임교원의 업무를 경감한다.
- ② 대학은 교수법 이수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확대하고, 교수법 연구모임의 지급 단가를 1건당 500,000원으로 증액한다.
- ③ 대학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과 관련하여 전임교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안전 보건 및 재해 방지)

- ① 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 재해 방지, 그리고 교수의 연구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② 대학은 교수의 연구와 교육활동(연구실과 실험실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연구·교육활동 포함)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수습과 피해보상을 전적으로 책임짐으로써 개별 교수나 피해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제6장 임금 및 복리 후생

제28조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및 폐지)

- ① 대학은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등급 간 지급액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 ② 조합과 대학은 비정년 전임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누적제 폐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③ 조합과 대학은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9조 (교연비 지급 등)

- ① 대학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② 조합과 대학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을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의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③ 대학은 연구년 교수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를 동일하게 지급한다.
- ④ 대학은 상담 횟수에 따른 학생 지도비 지급을 폐지하고, 매달 300,000원씩 학생 지도 경비로 자동지급하되, 차액 100,000원은 교육 분야에 추가 지급한다.

제30조 (교직수당 및 연구수당 지급)

조합과 대학은 전임교원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35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이 지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31조 (초과강사료 제도 개선)

- ① 대학은 전임교원의 초과 강사료로 강의 시간 당 50,000원을 지급한다.
- ② 대학은 매년 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강의 시간당 초과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을 정한다.

제32조 (복리후생비 지원)

대학은 조합이 주관하는 워크숍 및 각종 체육·문화 활동 등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연간 50,000,000원을 지원한다.

제33조 (대학 시설 이용 혜택 확대)

- ① 대학은 전임교원이 평생교육원, 국제어학원, 스포츠 콤플렉스 등의 대학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 ② 대학은 교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등의 후생 복지 시설을 확충한다.
- ③ 대학은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온수 및 샤워 시설, 화장실 비데 등을 설치한다.
- ④ 대학은 교직원을 위한 휴양 시설을 확충하고 설비를 현대화한다.

제34조 (주차비 징수 폐지)

대학은 전임교원에 대한 주차비 징수를 폐지한다.

제7장 단체 교섭

제35조 (교섭 원칙 및 절차)

- ① 대학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교섭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어느 일방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녹음·촬영 등의 방법으로 교섭 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

제36조 (교섭 사항)

단체교섭의 교섭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협약의 체결
2.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정 변경에 의한 보충협약의 체결

제37조 (교섭 요구 및 의무)

- ① 조합과 대학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서에 교섭 일시 및 장소,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 교섭일 7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어느 일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
-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 사유와 일시를 2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교섭위원 구성)

- ① 조합과 대학은 쌍방 적정한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교섭위원장은 위원장 혹은 그가 위임한 사람으로 한다.
- ③ 대학을 대표하는 단체교섭위원장은 대학의 총장 혹은 그가 위임한 사람으로 한다.

제39조 (대표위원의 참석 의무)

- ① 조합의 대표위원은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의 대표위원은 총장으로 한다.
- ②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서면으로 부여하고,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는 단체교섭 권한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자료 제출)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 (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 대표자의 서명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양측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2조 (합의서 작성 및 협약 체결)

- ①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한다.
- ② 단체협약은 조합의 위원장과 대학의 총장이 참석하여 체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에는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 (교섭 결과의 통보 및 관리 감독)

대학은 교섭 결과를 해당 기관이나 학과 등에 통보하며, 이후 시행 여부를 관리 감독 함으로써 교섭 결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한다.

제44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하게 된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조 (효력의 유지)

이 협약은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유효 기간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3조 (협약의 시행)

단체협약 효력 갱신을 위한 교섭 진행 중 기 합의된 사항은 협약서 체결 이전이라도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협약 갱신)

- ① 조합과 대학은 이 협약의 만료일까지 상대방에게 이 협약의 갱신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어느 일방에서도 협약 갱신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보충 협약)

- ① 본 협약의 유효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보충 협약을 체결한다.
 1.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현저한 변화
 2.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변화
 3. 대학 통합 등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노사 쌍방이 수정·보완에 동의한 경우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사 어느 일방이 보충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다른 일방은 조속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체결된 보충 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준용)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7조 (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쪽에서 진다.

제8조 (협약의 보관 및 신고)

이 협약은 서면으로 원본 3부를 작성하여 조합과 대학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고 조합과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행정 관청에 신고한다.